

# 투자일임계약서

년 월 일

고 객 :

회 사 :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 투자일임계약서

(이하 “고객”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이하 “회사” 이라 한다)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투자자금(이하 “계약자산” 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계약자산의 운용에 관해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에게 투자일임수수를 지급한다.

## 제 2 조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중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것으로 한다.

1. 채권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금융자산(CB, BW, RCPS, RP, MMF, MMT 포함)
2.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
3.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위해 공개되는 주식
4.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규정된 증권
5.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유가증권

## 제 3 조 (투자일임의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IPO 등 공모 방식으로 계약자산에 편입할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3. IPO 등 공모 방식으로 계약자산에 편입할 대상 유가증권의 수요예측(수량, 가격, 청약) 참여에 관한 일임
4. 계약자산의 인수, 매매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일임
5. 투자결과의 평가 및 향후 투자전략에 대한 일임
6. 기타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3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 5 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임 및 변경)**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담당자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할 수 있다.
2.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 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고객이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5.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일임 담당자의 사망,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고객이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일임 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6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1.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2.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3.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4.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제 8 조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

1.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3.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리스크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 9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고객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수시로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을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일임 담당자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6.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 10 조 (공모주 배정결과의 통지)**

회사는 공모주 참여 및 납입 후 최종 배정결과에 대하여 매 건마다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제 11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고객은 전화 또는 서명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최소 1 개월 전 서면에 의한 예고와 사전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나.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회(계약한 연도에는 3 회)이상 재무상태, 투자 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4.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제 12 조 (계약의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회사는 계약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 13 조 (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 시기)**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첨 1]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2.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3. 운용보수의 지급은 계산기간의 시작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가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수수료 산정 기준)**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3. 수수료 지급은 계산 기간내 총 실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 **제 15 조 (계약 조건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계약기간 동안 유지 조건으로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2 ①호 4 항(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조건 중 5 억 원 이상 평잔 유지 의무)"을 성실히 유지 및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 **제 16 조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계약자산의 운용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 17 조 (통지의무)**

1.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첨 1] 수수료 지급 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3. 고객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 18 조 (비밀유지의무)**

1.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9 조 (회사의 금지사항)**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 일임자산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고객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 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고객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자산으로 고객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자산 또는 신탁자산과 거래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자산으로 고객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자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회사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고객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8.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 19 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의 응모, 유상증자 청약,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한다.
4.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

#### **제 20 조 (계약 만료, 해지 시의 자산형태)**

회사와 고객의 계약만료 또는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자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 단, 유가증권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 **제 21 조 (투자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은 각 종목별 투자금의 회수 시 얻는 금액에서 투자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계산하며 투자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수익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14 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 **제 22 조 (자산의 소유권)**

1.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②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 ③ 유상증자의 청약
- ④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 ⑥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 ⑦ 자본시장법 제 5 조 1 항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2. 고객은 회사에 관련 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3 조 (관련 법규 등의 준용)**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4 조 (계약위반의 효과)**

고객과 회사가 이 계약에 열거한 약정에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대방은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고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투자일임담당자)**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할 담당자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과 변경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 담당자:
2. 연락처:
3. 우편물 수령처: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주소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회사 주소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별첨 1]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 1 조 (계약기간)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_\_\_\_년)

제 2 조 (계약의 내용)

1. 계약자산 : 고객이 회사의 투자일임에 의거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금액이 지출된 자산으로 고객과 회사가 상호 투자하기로 합의한 자산
2. 유지계약금액 :
3. 거래증권계좌 :

제 3 조 (일임수수료의 정의)

1. 일임 수수료는 [별첨 1]의 제 2 조 1 항에 따라 지출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1) 일임 수수료
  - 2) 기본운용수수료
  - 3) 성과수수료
  - 4) 공모주 투자의 수익금액은 제세금 및 거래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급할 일임수수료는 계약기간 동안 제 1 항의 일임수수료의 누적으로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총 일임수수료가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할 일임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정산 기준일 현재 미 매도 주식은 정산하지 아니하나, 계약 만기 후 미 갱신 또는 해지 시에 한하여 미매도주식은 만기일 또는 해지일 증가로 평가하여 정산한다.

#### 제 4 조 (일임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1. 기본운용수수료는 각 기에 해당하는 대상기간의 시작시점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일시 지급한다. 단,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에서의 차감방식이 아닌 별도 납입으로 지급한다.
2. 성과수수료는 각 기에 해당하는 대상기간 말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3. 대상기간은 투자금액 회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임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각 대상기간 종료일까지의 누적으로 계산한다.
4. 계약이 연장된 경우의 대상기간 및 일임수수료는 [별첨 1] 제 3 조, 제 4 조에 준하여 계산한다.
5. 중도해지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 가. 기본수수료: 각 기의 미경과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그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 나. 성과수수료: 계약 유지기간 중의 수익금을 [별첨 1] 제 3 조에 따라 정산한다.

#### 제 5 조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주소:

담당자명:

전화:

팩스: